[양식 제2호]

인지(친권자지정)신고서

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형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야에 대한법률구조공단

① 퍼 인 지 자		한글	(성)	/ ((명)						성	별		11남 22여		4
	성명					-	본 (한자)				주민	등론	-번호	-	_	
		한자	(성)	/ ((명)						출생연월일					
	등록	·기준지											'			
	주 소															
	모의성명 및 등록기준지		성	성 명 주민등록번호						-	-					
			등록	-기	준지											
② 인 지 자	성명	한글	(성) / (1								민등록			_		
	70.0	한자	(성)		/ (명)					번	ই					
	등록	- 기준지														
③인지판결확정 (성일자)			년	<u>(</u>	월		일	법	원명			법원
④동의자 (성년후견인)				·			(1) <u>r</u>	<i>돈</i>	너명	주 번	민등록	1 5		_		
5		성명					주민. 번	등록 호			_			피인지자 와의관계	1부	2모
친권	자	지정 일자			년	월 일		기 원					를의) j		원의	재판
		원인 일자		년 钅		월	. ē	Ī	원	인	 협의 ()법원의 재판			
77]타시	하														
⑧ 신 고 인	성 명		⑩ 또는 서명						명	명 주민등록번호			_			
	자 격		1 부 2 모 6 기타(자격:				③ 유언집행자			4 소 제기자)			5 소의 상대방			
	주 소															
	전 화										이메	일				
⑨제출인			성도	- - 년						주	민등록	÷번	호			

^{**}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: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(父)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 - :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: 성명(한글)란에 "임신 ○개월 중의 태아"라고 기재하되,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.
 - :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③란: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 - : 조정성립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,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"인지판결확정일자" 아래의() 안에 "조정성립", "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" 또는 "화해성립", "화해권고 결정확정"이라고 기재하고. "년월일"라에 그 성립(확정)일을 기재합니다.
- ④란 :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동의자인 성년후견인이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 - ** 다만 2018. 6. 30.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동의자인 후견인이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- ⑤란: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 - : 지정일자 협의에 의한 경우→협의일자,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→재판 확정일자
 - : 지정원인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()안에 그 재판법원명을 기재합니다.
- ⑦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-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유
 - -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, 그 직계비속의 성명,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
 -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(한글한자 병기), 생년월일, 부모성명, 피인지자와의 관계
 -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
- ⑨란 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.
-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
-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(조정조서)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(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).
- ※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2.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(母)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(피인지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,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유부녀(有夫女)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).
- 3.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(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).
 - : 협의에 의한 지정- 협의서, :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-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
- 4. 유언서등본(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) 1통.
- 5.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: 성년후견인의 동의서(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"동의자"란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
 - ※ 다만 2018. 6. 30.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(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"동의자"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6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
 -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: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원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 -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: 인지증서 등본 1부 및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
- 7. 법원이 성 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재판서등본 1부.
 -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- 8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- ① 임의인지의 경우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 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
 -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: 신분증명서 사본
 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8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9.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
 - 예 : 자녀의 기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
 -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
 - 부(父)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